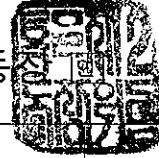


### 직권조치결과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19년 11월 07일

홍은제2동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이**	이** 1972-02-03	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19-10-28
이**	이** 1971-05-15	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증가로6길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19-10-28